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01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이용선 • 안민석

강민정 · 소병훈 · 장철민

양정숙 • 민형배 • 한병도

김성환 • 양이원영 • 안규백

김수흥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봄, 영남·호남·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(Colony Collapse Disorder)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(약 78억 마리)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.

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류, 말벌류의 공격,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, 특히, 겨울철고온현상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화분 채집 등 외부활동을 하다 다시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폐사하는 등 기후변화가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.

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꿀 벌 폐사 사건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,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 여 '꿀벌의 서식환경 조사·연구'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, 대책 마련, 피해 지원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. 더불어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의 광역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)·기초(시, 군, 구)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"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"를 "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"로 한다.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· 연구 및 지원계획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직·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"구청장(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에

게"를 "구청장에게"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"시장"을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	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
무) ①・② (생 략)	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
	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
	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
	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
	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
	련하여야 한다.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양봉	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	
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	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
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	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
따른다.	<u>서</u>
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	제5조(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
수립) ① (생 략)	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12.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
	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
	한 조사・연구 및 지원계획
<u>12.</u> (생 략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	제12조(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

지원)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(양봉농가의 등록의무) ① 저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(생 략)

제14조(영업의 승계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
과 같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
<u>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</u>
여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은
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
지원을 할 수 있다.
제13조(양봉농가의 등록의무) ①
(현행과 같음)
2
 구청장에게
•
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영업의 승계) ① (현행과
같음)
②

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<u>시</u> <u>장</u>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 을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 흥청장,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 장·광역시장·<u>도지사</u>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u>특별</u>
<u> 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</u>
<u> 장</u>
제18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 ①
<u>특별자치시장·도</u>
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② (현행과 같음)